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118호

「3인 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시간 변경」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3인 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3인 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대상국 중 휴무시간을 변경 적용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제도 휴무시간 변경

총괄국	대상국	관서급	점심시간 휴무시간		비 고
			당초	변경	
이천	백사	별정국	12:00~13:00	12:30~13:30	관서특성 고려
	부발	별정국			

나. 시행일: 2019. 1. 2.(수)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12.12.(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전 화: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 이메일: dapnesy@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